



문서번호	교육청소년과-8719
결재일자	2015.4.1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담 당	이동진(소년과담당)	교육청소년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부구청장
유현정	황지연	최병재	도일환	04/10 김병환
협 조	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규제개혁담당 김용환 주무관 김하연			



『서울특별시 상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

2015. 4

교육문화복지국
교육청소년과

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안을 확정하고자 함

I

추진절차

-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』 일부 개정 계획
 - 부구청장 방침(교육청소년과-5713, 2015. 3. 12)
-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 입법예고
 - 입법예고 기간 : 2015. 3. 19 ~ 2015. 4. 8
 -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 - 의견제출 사항 : 없음
- 영향평가 의뢰
 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개선권고
 - (기존안) 제11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☞ (결과반영) 제11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법제심사 의뢰(기획예산과)

- 법제심사 결과 : 이견 없음

II 주요 개정내용

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
 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⇒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조문 개정
 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따라 “아동” 용어의 정의 변경
 - 조례 제2조제2호 중 “12세 이하의 어린이” ⇒ “18세 미만의 사람”
 - 조례 제1조 ~ 제10조, 제14조, 제16조의 내용 중 “어린이”와 “어린이 친화도시” ⇒ “아동”, “아동친화도시”로 변경

III 향후 일정

-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2015. 4. 15
- 구의회 심의 : 2015. 4. 23 ~ (제234회 임시회)
- 조례공포 및 구보 게재 : 2015. 5. 28

붙임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